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다시 한 번, 제도를 가다듬습니다.

해현경장(解絃更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뜻으로, 동중서라는 학자가 중국 한나라 무제에게 개혁안을 올리며 한 말입니다. 이때 동중서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도 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옛말이 아직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제도가 시대정신,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듭니다. 열정적인 공직자가 있다하더라도 제도가 그대로라면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행태가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적극행정 사례집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행정의 주요 사례 및 시사점을 확산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도개선 사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사례집이 훌륭한 연주자로서 공직자의 열정을 고취하기 위함이라면, 제도개선 사례집은 조율된 악기와 같이, 올바른 제도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다 해도, 여러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과정은 어쩌면 계속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산 정상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시지프스의 과업과도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국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청렴하게 거듭나도록 하는 부패방지 제도개선, 그리고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한 고층 해소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더불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책에 나온 사례들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들입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국민을 위한 보다 대담하고 섬세한 변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도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응원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1장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1. 미세먼지, 국민의 생각으로 잡습니다	15
2. 모바일 상품권, 편리한 만큼 공정하게	27
3.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도록	33
4. 아동급식카드, 맘 편히 이용할 수 있기를	39
5.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이제 그만!	44
6.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잡고 품질은 올리고!	51
7. 아파트 입주,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56
8. 여름날 그늘막,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62
9. 생애 마지막 선택, 편리하도록	66
10. 국민을 위한 공공 휴양시설, 제도로 보완합니다	72

2장 정부행정을 깨끗하게

11.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이제는 그만	80
12. 공직유관단체 임대사업, 보다 공정하게	85
13. 부패행위자의 업무수행, 차단합니다	89
14. 대학을 튼튼하게, 회계를 깨끗하게	92
15. 입시전형료,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99
16. 공직자는 무료? 공개강좌를 공정하게!	104
17.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보다 공정하게	110
18. 갑작스러운 졸업자 응시자격 제한, 이제 그만	114
19. 중도해고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118
20. 공공기관의 결정, 신뢰할 수 있도록	124
21. 뇌물 제재,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128
22. 정책연구, 투명하고 올바르게	133
23. 자격, 갖추는 것이지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140
24. 촉탁 의사 관리규정이 마련됩니다	144
25. 의료현장을 깨끗하게, 리베이트 관행 개선	148





3장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26. 장애학생 특수교육을 응원합니다	154
27. 학교폭력 재심절차, 더 빠르고 공정하게	158
28. 온라인 입사지원, 온라인답게 편리하게	166
29. 출산휴가급여, 체당금에 반영됩니다	169
30.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대상에 포함됩니다	172
31. 어르신 운전자 안전교육,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176
32. 자동차 안전, 소화기로 대비하세요	180
33. 건본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해집니다	186
34.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을 명확하게	191
35. 잘못 부과한 전기료, 청구방식이 개선됩니다	195
36. 공동주택 수도료 부과, 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199
37.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준이 밝혀집니다	203
3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를 누리기 편리해집니다	208
39-1. 열차 이용을 편리하게 - 자연배상을 간편하게	214
39-2. 열차 이용을 편리하게 - 할인을 할인답게	218
40.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차량 처분이 쉬워집니다	221

제도개선이란?

국민 삶 속의 제도, 국민 삶을 위한 제도개선

제도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규범입니다. 제도가 있기에 안전한 물건 인지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는 안내받는 등 여러 편의와 행정서비스가 제도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때문에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완벽하게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 중요한 가치들을 고려하여 온전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급속한 기술 발전, 사회 환경 등 변화에 따라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문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국민생각함, 국민콜110 등 다양한 정책소통창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 제27조 및 제47조 등에 근거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3호),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제4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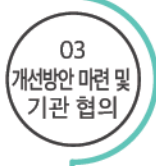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부패방지(법 제27조) 및 고충해소(법 제47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재결례,
국회·감사원 자료 등



- 각종 서면자료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 과제별 법령·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소관기관과 개선방안 수용 여부 협의



- > ● 소·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 후 개선 권고



- > ● 권고 이행실태 점검·평가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1장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제도개선”

제도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민참여

그동안 제도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만들어져왔습니다. 공직자들이 공공의 복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이후 실제 행정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마련과 개선은 국민의식의 성장,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분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보다 세상의 변화가 더 빠르고, 공무원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절절한 문제들이 민간부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권익위는 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참여형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참여형 제도개선이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형태의 제도개선을 의미합니다.

국민참여형 제도개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실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로 여기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갈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이 집단·조직화되어 사회갈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① 문제 확인

*국민신문고 민원, 부패·공약신고



② 문제점 분석

*민원 빅데이터 분석



③ 국민의견 수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④ 제도개선 방안 도출

*관계기관 협업, 이후 이행관리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개선하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국민을 지향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

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해결방안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일종의 관성입니다. 만들어지면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제도가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변화하는 국민의 삶을 구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국민입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제도를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제도의 방향은 처음도 끝도 국민입니다.

“1. 미세먼지, 국민의 생각으로 잡습니다”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19. 6. 10.)

미세먼지와 함께한 A씨의 하루

오전 6시 30분. 알람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희뿌옇습니다.

‘저건 안개일까, 미세먼지일까.’

스마트폰으로 수치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미세먼지가 한 가득입
니다.

‘초미세먼지까지 당침이네. 마스크도 챙겨야겠다. 그나저나 우리 애는
언제 맘 놓고 밖에서 뛰어놀려나.’

A씨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러 갑니다.

오전 8시. 어린이집에 도착한 A씨, 선생님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오늘 공원 실외활동은 취소되었어요. 아이들이 기대했을 텐데 좀 아쉽게 되었네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안전이 제일이죠.”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슬쩍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린이집 내부는 미세먼지 관리 잘 되고 있죠?”

“그럼요, 어머님. 반마다 공기청정기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이라 관리의무는 없는데, 원장님이 좀 꼼꼼하셔서 미세먼지 측정기도 사셨어요. 요 앞에 B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측정기가 뭐야, 공기청정기도 없어요.”

“아, 네. 하하”

A씨는 B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친구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오전 8시20분. 운전을 하던 A씨는 신호대기 중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가보다.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 나쁨인데... 엇 저 분은

마스크도 안 쓰셨네.’

A씨는 공공근로를 시작한 아버지 생각이 나 전화를 겁니다.

“아빠, 저예요.”

“어~ A야. 잘 지내지? 별일 없냐?”

“저는 잘 지내요. 아빠. 근데 왜 이리 시끄러워요? 일 나오셨어요?”

“어~ 나왔지. 지금 한창 일하고 있어. 별일 없냐?”

“아니, 마스크는요? 마스크는 썼어요? 오늘 미세먼지 나쁨인데”

“괜찮아, 금방 하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지?”

“아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무슨 공공근로예요?”

A씨는 괜히 속상해져서 아빠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삐~ 삐~ 소리와 함께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A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06~21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동참,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내일은 버스타야겠다. 차 한번 잘못사서 무슨 죄야. 조기폐차라도 하든지 해야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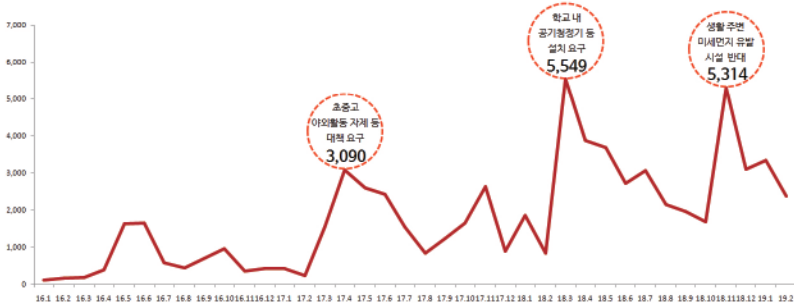
3년 전 중고 노후경유차를 산 A씨는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후회스럽습니다. 이참에 차를 바꾸려고 마음먹은 A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6개월 전 지금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니, 경유차가 여기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왜 하필 2년이야. 2년 다 채우고 폐차하라는 거야?”

A씨의 한숨은 깊어져 갑니다.

오후 7시. 집에 돌아온 A씨는 바쁘게 저녁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방 창문 밖으로 엄청난 까만 연기가 보입니다. A씨는 속이 터집니다.

“아니 저 집 화목보일러 연기가 여기까지 새어 들어오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단속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미세먼지에 연기까지 아주 불난 데 기름을 뿌리네.”



〈미세먼지 관련 민원 추이〉

A씨는 한숨을 쉬며 오늘도 빨간 불을 켜고 열심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미세먼지대책,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민원도 급증하여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 2개월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총 68,299건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한 14,649건의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3개 분야 12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공공근로 등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노약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있더라도 야외 근로를 나가고 있어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연면적 430㎡ 이상만 실내공기질 관리의무가 있어 2018년 4월 기준 어린이집의 86.0%(34,071개)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같은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관리방안이나 지침이 부족하였고,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설비도 소음발생, 전기요금 부담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했습니다.

둘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유차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폐차한 후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조기 폐차된 경유차보다 신규 등록된 경유차가 4.7배나 더 많았습니다.

또한 전기화물차에 대해 영업용번호판 신규발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노후 경유화물차를 양도하고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동시에 챙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폐차·등록말소 할 때와 달리 수출 시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 판매로 차익을 얻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소차의 등록대수는 보급목표 대비 각각 70%, 45.9%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은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전기·수소차 보급을 지원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도 대기관리권역과 미세먼지 농도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사를 간 사람이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도 폐차가 물리면서 폐차 말소까지 최대 2달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폐차장에 입고한 차가 책임보험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의 사용·관리와 관련한 법적기준이 미흡하여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등 최근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정책제안 및 민원 14,649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미세먼지 저감요청 관련 민원이 38.2%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24.4%,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21.1%를 차지했습니다.

분야	비중(%)	주요 내용
① 미세먼지 저감 요청	38.2	적극적 외교노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등
②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	24.4	친환경차 지원, 취약계층 지원, 옥외근로제한 등
③ 교육현장 대책	21.1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야외활동 자제, 대응요령 숙지 등
④ 생활갈등	13.5	비산먼지, 불법소각, 배기연통, 화목보일러 등 관련 갈등해소
⑤ 차량·선박 등 단속	2.8	렌터카 등 자동차검사, 오토바이 운행제한, 선박단속 등

민원분석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권익위는 전문가 의견청취, 교육현장 및 지자체 대상 간담회 개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공동브리핑으로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3개 분야 12개 문제점에 대하여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단계별로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 야외근무 즉시 중단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현장,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후경유차를 감축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 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폐차 후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의 보조금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폐차·등록말소할 때와 같이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편법을 방지하기로 하였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로 규정된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사각지대와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과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 관리권역을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기간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의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 인포그래픽

변화의 현장,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폐차 후 구매차량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폐차장에 들어간 차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이행 의무가 면제되었고,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항만대기질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관리권역 지정확대, 화목보일러 관리지침 마련 등 권고
과제가 상당수 이행되었습니다. 권익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악위 제도개선 NEWS

이달의 개선사례를 소개합니다

1월, 바뀐 제도는?

폐차장에 들어간 차, 장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

운전과거로 인한 차...
검사일만 끝나고 과태료를 내나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포함,
폐차장에 입고된 모든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항(201.2.2)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이제부터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 완화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지역별 차등지원금(지역별 차등지원금)을 지급하며, 2년 이상 거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등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작은 해결책들을 하나씩
모색하다보면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국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이기애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든 제도개선이
잘 추진되어 보다 맑은 하늘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숨을 쉬는
그날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2. 모바일 상품권, 편리한 만큼 공정하게”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19. 8. 19.)

물품형 상품권은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로 기프티콘과 함께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느 덧 일반적인 생일축하 방법이 되었지요. 여기 친구를 만나 한턱 쏘려는 A씨도 그렇게 많은 축하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권을 쓰려고 카페에 들어왔네요.

“나 저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거 엄청 많아. 오늘은 내가 쏘다!”

“손님, 이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안 됩니다.”

“예? 그거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네, 금액으로 적힌 것은 1년인데, 물품은 3개월이에요.”

‘똑같은 상품권인데 뭐가 다른 거지? 아니 그리고 언제 받았다고 벌써 끝났어?’

기분 내려다가 기분이 내려간 A씨는 시무룩한 얼굴로 다른 카드를 주섬 주섬 찾아봅니다.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새고 있는 내 돈 찾기 프로젝트를 권익위에서 실시했습니다. 환불부터 기간연장, 잔액반환, 현금영수증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평소 불편하셨던 점, 어디 한 번 확인해 볼까요?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에 존재하는 불편함들

상품권은 종류마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5년,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인데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입니다. 이벤트·영화예매권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번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품권이고, 어차피 연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의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표시사항 등 안내가 미흡해서 실제로는 다른 물품을 구매하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들거나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약관을 정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상 제공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벤트 상품이라도 표준약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시즌 한정·할인 등을 이유로 유상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환불·기간 연장 불가를 명시하는 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 유효기간 내 사용을 못했어요. 연장이 되나요?

A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쿠폰은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Q 유효기간 내 사용을 못했어요. 환불이 되나요?

A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쿠폰 환불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취소기간을 확인하시어 반품신청을 해주세요.

유상 프로모션 상품권의 환불·연장불가 사례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으면 90%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아 사람들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전액을 모두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를 낙전수입이라 하는데, 실제로 주요 5개사 모바일 상품권의 4년간('14년~'17년)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으로 '19년에 소멸하는 액수만 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별도 수수료 또는 과도한 배달비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견으로 더 편리하게 바꾸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편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생각의 탄생→생각의 발전→'생각의 완성' 3단계를 거쳐 국민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우선 모바일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6.1.~'19.6.) 총 1,014건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크게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 '약관 적용제외', '현금영수증 및 추가금액'에 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네이버 지식인 공동설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내 돈이 새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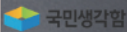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간연장, 잔액 반환, 현금영수증 등등
새고 있는 내 돈 찾기 프로젝트!

공모기간: 5월 1일 (수) - 5월 15일 (수)
경품: 문화상품권 3만원(5명)
아메리카노 기프트카드(40명)



환불X
기간연장X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새고 있는 내 돈 찾기 프로젝트

모바일상품권을 지켜라



설문기간: 6.24.(월) ~ 7.8.(월)
경품: 배스킨라빈스 상금백만원(50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총 26,162명의 국민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세요.”, “프로모션이라고 환불과 연장이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해요.”, “사용 안 한 상품권은 환불해주세요.” 등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품·용역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형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을 100% 반환하도록 상품권에 명시함으로써 원치 않는 추가 구매나 잔액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유상으로 구입한 프로모션·이벤트 상품권의 경우에도 환불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불·유효기간 연장이 곤란했던 일부 영화·공연 예매권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미사용 상품권이라면 잔액의 90%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하고, 통지도 기존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이었던 것을 30일전으로 앞당겼습니다.

넷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 사용 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분쟁해결기준에 명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선물부터 사용까지 편리하게

국민생각함·이마트 공동실은

국민 2만6천명 의견으로 바꿨습니다!

유효기간 확대

3개월 → 1년

제각각인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

미사용시 90% 환불 고지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고지

통지사침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미사용잔액의 90% 환불 고지

프로모션·이벤트 상품권

유상 구입했다면 환불·유효기간 연장 가능

국민 26,162명 의견 수렴

모바일 상품권

영화예매권

환불·연장 가능

추가대금요구

분쟁해결기준 마련

상품제공 불가 100% 환불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액 반환(상품구매 취소)

현금영수증 발급

편법 판매 방지

금액형과 물품형 상품권 구분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내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은 '17년 1조 2,016억원에서 '18년 2조 1,086억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급격히 성장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정상화되고,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19. 12. 4.)

지금까지 이런 할인은 없었다. 무제한 감상 100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이참에 음악 감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문화생활을 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A씨는 우연히 특가광고를 보게 됩니다.

‘모바일 음악감상, 3개월 동안 월 100원에 무제한으로 누리보세요’

“와 대박. 진짜 저렴하네. 이벤트 금액으로 제대로 이용해봐야지!”

바로 서비스를 신청한 A씨. 그런데 친구 B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A야, 너 음악 들을 때 앱 뭐 쓰고 있어?”

“요새 △△앱이 특가 이벤트야. 월 100원이라. 너도 신청해봐.”

“야, 그거 3개월인가 뭐 기간이 있지 않아? 조심해. 나도 광고 보고

혹해서 이용했다가 3개월 지나니까 한 달에 만원씩 결제되더라. 고객센터는 먹통이고 게시판에 문의했더니 이벤트 기간만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

“뭐라구? 아니 그런 건 광고든 뭐든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불합리한데... 그럼 나 속은 거?”

꼭꼭 숨어라, 해지버튼 보일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더불어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구독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집 안에서의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콘텐츠 구독서비스는 편리하고 쉬운 구매와 달리 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다음의 것들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해지절차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요금이 높은 요금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청약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크넛지(Dark Nudge)’라는 방법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선택을 반복하기 귀찮아하는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귀찮고 피곤하게 만듦으로써 이벤트 기간 이후에는 소비자가 높은 가격으로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묻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데 능숙한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들이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지식인과 협업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행 콘텐츠 구독서비스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콘텐츠 구매 절차는 손쉽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해지 관련 정보는 앱 내에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분에 대한 대금이 해당 콘텐츠 서비스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습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집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콘텐츠 구독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단계에서 해지할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벤트 종료 등 요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벤트 특가 등을 광고하는 경우 계약 유지기,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권고내용과 함께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20년 안에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비대면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이 직면하는 불공정, 불편에 대하여 권익위는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구독서비스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을 갖추어 합리적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4. 아동급식카드, 맘 편히 이용할 수 있기를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20.6.8.)

저는 아동급식카드를 든 결식아동이에요

A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느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가난함과 불편들이 이제는 크게 서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야야! 우리 편의점에 가서 치킨하나 뜯자.”

“콜, 좋지! A야 너도 가자.”

“나 치킨 안 좋아해.”

“헐~ 치즈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마 너 돈 없냐?”

“아냐. 너희들끼리 가.”

사실 A는 돈이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아동급식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A에는 돈보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다가 결제를 거부당했을 때 쏟아질 아이들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말입니다.

A는 예전에 편의점에서 결제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땀을 주뻗주뻗 흘리면서 ‘미안하다.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는 품목이네.’라고 말을 했고 그 순간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던 A에게, 편의점은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혼잣말처럼 떠올린 생각에 괜히 울적해지는 A입니다.

편의점 구입가능 품목, 알기 어려워요

권익위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하여 여러 민원들을 탐색,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급식카드에 관한 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아동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카드로,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끼니 당 일정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결식아동들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아동급식카드 결제가 가능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끼니 당 금액이 넉넉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식당이 많지 않은 등 문제로 인해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의 경우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구입제한품목(편의점)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품목들은 구입이 가능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조각치킨과 라면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각치킨과 라면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햄버거는 구입할 수 있는데 시리얼은 구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차이를 결식아동들이 인식하고 정확하게 구입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결제 거부는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권익위는 아동급식카드 전반에 대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카드를 이용하면서 눈치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좀 더 넉넉하게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부터, ‘실제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나가서 안타까웠다.’는 목격담까지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아동들이 보다 맘 편히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권익위는 우선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몰라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보건복지부와 공감하였습니다.

규정방식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권익위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인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2020년 7월 16일 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 품목, 과자나 빙과, 양념 등과 같은 식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그리고 급식과 무관한 비식품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입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형태로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점 구입제한 물품을 조정하면,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아이들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문제를 살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이제 그만!”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20.5.11.)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어디로 가야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간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원장선생님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린이집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주부터 문을 닫게
됐어요. 그동안 믿고 맡겨주셨는데 죄송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2월이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곳은 모집절차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힘드네요.”

A씨는 부랴부랴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B어린이집이 다음 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는 된 건가요?”

“네, 벌써 두 달 전에 신고수리 되었어요. 얘기 못 들으셨나요?”

“네, 저는 오늘 폐원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곳을 알아볼 틈도 없이... 혹시 근처에 어린이집 이동 가능한 곳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대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근처 어린이집 연락하셔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없네요.”

A씨는 다시 급하게 근처 어린이집을 찾아봤지만, 다음 주부터 보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생각해봤지만, 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와 연결되려면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만 도와줘요.”

“그래. 엄마가 갈게. 너는 걱정 말고 회사 다녀와.”

그날 밤, A씨는 잠든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몸도 아프면서 아이를 돌보려 와줄 엄마에게도, 갑자기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한 아이에게도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국민의 말씀으로부터 행정의 빈틈을 확인합니다.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2019년 기준 총 37,371개로, 연간 예산은 4조 3,887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만 0~2세까지는 어린이집이 보육을 전담하게 되어 있고, 만 3~5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공평한 보육·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0~2세의 경우 67.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만 0~5세의 경우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학부모들의 고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폐원 어린이집은 총 11,563곳으로, 관련 민원은 약 1,800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 예정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폐원을 통지함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가 폐원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았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절차나 서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폐원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인해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면, 다른 아동보다 입소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또한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원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미재원아동과 달리 입소대기 신청도 3개소가 아닌 2개소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의 폐원 중 41.8%가 1~3월에 집중되는 등 통상 어린이집 폐원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없어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 또는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지역의 어린이집이 일괄적으로 폐원하는 경우와 같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폐원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지역의 보육계획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는 ‘폐원’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폐원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의 사각지대, 개선합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려낸 제도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원신고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이 즉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와 영유아 이동계획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하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폐원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마찬가지로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려 보다 수월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하여 해당 서비스가 사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하여 당장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이동하기 전까지는 대기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폐원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보육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모집 끝났는데 갑자기 폐원이요?

어린이집 폐원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폐원하려는
어린이집은



- 폐원사실을 두늦게 통지
- 영유아의 타기관 이동조치 등 미흡



- 폐원신고와 동시에 학부모 통지
-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 이용신청 안내

소관
지자체는



- 폐원통지 여부 확인절차 부재
- 대규모 폐원 등에 대한 대책 부족



- 학부모 통지 및 영유아 이동계획 확인 후 신고 수리
- 지자체 차원의 대응 필요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대책 심의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는



- 미재원(3개소) 아닌 재원아동으로 분류되며 2개소만 입소신청 가능
- 아이돌봄신청을 물라 장기간 대기



- 입소신청 어린이집 3개소로 확대
- 폐원통보와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기 없이 연계, 보육공백 차단

6.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잡고 품질은 올리고!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불편요인 개선(*20.7.20.)

여자교복이~ 바지라면 깔끔하고 편해서 괜찮을 텐데 ~

A씨는 감개무량합니다. 노랑 병아리만 같았던 아이 B가 어느새 커서 벌써 중학교를 간다니! B가 교복을 입는 것을 상상하자 A씨는 왠지 몽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B가 난생 처음 입을 교복 치수를 재는데 함께 가기 위해 A씨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드시 교복 치수측정기간(3일) 내에 방문하셔서 측정하셔야 교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일? 그것도 평일이네. 아휴... 맛별이 학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보호자 동반이 필수니 하루 휴가를 내야겠네.”

그렇게 휴가를 낸 A씨는 B의 손을 잡고 교복을 고르러 갔습니다.

“재킷, 조끼, 블라우스, 치마. 이렇게 드리면 되죠?”

“아 저희 애는 치마 말고 바지교복으로 할게요.”

“여학생은 기본이 치마라서, 바지는 추가 구매하셔야 해요.”

“네? 요새 바지교복 많이 입던데 선택이 안 된다구요?”

“네. 안되세요.”

‘여름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편찮을 텐데~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요~ 이히!’

갑자기 A씨는 옛날 유행가를 떠올렸습니다. 여학생은 바지를 기본으로 선택할 수 없다니! 2020년이나, 그 옛날 유행가가 울려 퍼지던 때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A씨는 그저 씁쓸합니다.

지역별 제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확인 하였습니다.

교복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되어, 이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대금지급을 하는 등 학교가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교복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학생 ·

학부모가 체감하는 불편요인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교복 관련 국민 신문고 민원은 연간 약 1,000여건 수준이었는데,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높은 추가금, 바지교복 선택 제한, 낮은 품질, 촉박한 구매기한 등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을 통해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제도 간 차이가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단가가 책정되는 문제입니다. 다수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재킷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액낙찰 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도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교복 품질과 관련하여서는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양서*가 공고되거나, 기재된 사양과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양서(仕様書): 물건의 내용이나 사용법 등을 설명한 문서

또한 교복 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하여 맞벌이 학부모가 동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치마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가 구매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매부터 착용까지 학생 · 학부모의 입장에서

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선정 평가 시 가격적정성에 대하여도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하여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섬유소재, 혼용률 등 사양이 현행화된 수치로 입찰공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학교에

납품된 교복을 조사하도록 하여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교복 치수 측정기간에 주말을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편히 동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치마/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복을 입는 것은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7. 아파트 입주,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19. 12. 4.)

꿈에 그리던 내 집, 근데 입주는 언제 하죠?

A씨는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입주예정월은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새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거기엔 내 방도 있지?”

“응 이제 곧 우리 새집으로 가는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 방도 예쁘게 만들어 줄게. 우리 새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2018년 12월, 입주예정월이 1달 남았는데 도무지 입주통보가 오질 않습니다. 다음 달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터라 걱정이 된 A씨는 시공사에 연락했습니다.

“저 아파트 입주일이 언제인가요?”

“예~ 저희가 정해지면 통보 드릴 거예요.”

“아노 제가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입주일을 알아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알려드릴 거예요.”

한숨과 함께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A씨, 이제 곧 나가나요?”

“아 그제...”

“이제 나도 빨리 다음 사람 받아야지”

“아 예...”



“언제 나가는지 좀 이야기해줘요.”

“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새 집 입주를 앞두고 막막한 A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하는데 알 수 없었던 입주시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 통보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월’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입주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하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잔금, 이사업체 계약, 그리고 아파트 내 세부 시공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면 이러한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집을 언제 비울 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입주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곳이 없어 모텔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입주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야하는지, 즉 입주지정기간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공사들이 임의로 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입주자는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지정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이사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는 동시에 여러 세대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한 통로에 사다리차를 여러 대를 놓을 수도, 엘리베이터에 여러 집의

살림을 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라도 받아서 이사하려고 하면 날짜가 겹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세대규모와 관계없이 어느 단지는 30일, 어느 단지는 45일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입주지정기간을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 즈음에는 입주지정기간을 늘려달라는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국민 의견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권익위는 민원 동향,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에 관한 문제가 다수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최근 약 5년간('14.~'19.8월) 아파트 입주통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2,356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통보 관련 민원이 크게 '입주통보를 제때 받지 못한 것', '입주지정기간이 임의로 정해진 것'에 관하여 많은 민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각함, 네이버 지식인과의 공동설문으로 6,246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입주통보가 급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통보 시점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통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면 이사 준비가



〈국민생각함 설문〉



〈지식인 공동설문〉

어렵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과 더불어,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의견을 더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입주통보를 실제입주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통보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 등 법령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입주통보를 받으면 그로부터 일정기간 뒤에 실제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주예정자가 예상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뒤 이사를 준비할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입주시정기간에 관한 기준을 주택공급규칙 등 법령에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입주시정기간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부당하게 짧은 입주시정기간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

여유 있게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입주통보를 실제입주일로부터 얼마나 이전에 통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입주지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2020년 내에 주택공급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입주를 준비하면서 겪어왔던 불편이 줄어들 것이 기대됩니다. 더 마음편한 입주, 국민의 불편으로부터 문제를 이해하고 국민의 의견으로 바뀌나갑니다.



“8. 여름날 그늘막,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 · 관리 기준 마련(17. 9. 29.)

더운 날 땀을 식혀주는 그늘막, 그런데 그늘막에 다치면?

일흔을 넘긴 A씨는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훔쳐내며 걷고 있었습니다. 5월, 아직 여름이라기에 조금 이르지만 이미 한여름 폭염마냥 날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 횡단보도 앞에 행사용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안에서 땀을 식히며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A씨도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참 좋네. 허허허.”

그리고 다음날. 밤새 비바람이 휘몰아쳤다가 아침이 되자 다시금 불볕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A씨는 여느 때처럼 산책을 나가다가 횡단보도에 도착하자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 그렇게 바람이 불더니만. 허허허.”

그런데 그 순간, A씨는 얼굴을 감싸 쥐면서 쓰러졌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천막 한 쪽이 내려앉으면서 지지대가 쓰러졌고, 지지대가 A씨의 눈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A씨는 편리해보였던 천막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따지고 싶어 천막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에 상처만 더 쓰러왔습니다.

그늘막의 예상치 못한 ‘그늘’

그늘막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늘막에는 예상치 못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늘막의 규격이나 설치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늘막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그늘막보다는 재활용이 쉬운 행사용 천막이나 간이 텐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인삼밭에서 빛을 차단하는데 쓰였던 검정 차광막을 주변 가로수에 끈으로 묶어 그늘막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늘막 설치 장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위나 점자블록 위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나 운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늘막을 설치한 뒤 유지·관리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설치된 그늘막에 물건을 갖다 두거나, 차량을 주차하는데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풍이나 폭우 등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에 대한 배상 조치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 지자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자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더운 날 땀을 식혀주는 그늘막, 그런데 그늘막에 다치면?

권익위는 민원분석,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그늘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이 정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늘막의 형태 및 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해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고, 도시 미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늘막의 운영기간과 장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고, 점자블럭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늘막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4월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그늘막의 설치 장소, 종류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늘막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튼튼해지고 좀 더 깔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은 획기적으로 줄고, 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보상도 전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늘막,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갑니다.

“9. 생애 마지막 선택, 편리하도록”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19. 9. 23.)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싶었던 A할머니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아범아. 나는 저 산등성이로 해가 슬그머니 넘어가면 고거 보면서 영감하고 내가 살던 집에서 갈란다. 그러니까 곁에 갈 수 있도록 해다오. 억지로 붙잡지 말고.”

A 할머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들에게 병원에서 세상을 뜨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러한 뜻을 지킬지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정에서 평소 같은 고민을 하던 B 할머니를 통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라는 제도를 들었습니다.

“나 지난주에 시내 나가서 소원 풀었어.”

“무슨 소원?”

“나라에서 죽기 전에 서약서 같은 거 써 놓으면 내 뜻대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대. 시내 가서 그거 써놓고 왔지.”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얼른 해야겠네. 근데 그거 꼭 읍내에서만 해야 되나? 요 앞에 보건소는 접수 안 되나?”

“안된대. 시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받는데.”

“왜?! 아니 보건소에서 좀 받아주면 안 되나?”

A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좋은 제도, 그런데 이용하기 불편해요

정부에서는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 거부신청)를 2018년 2월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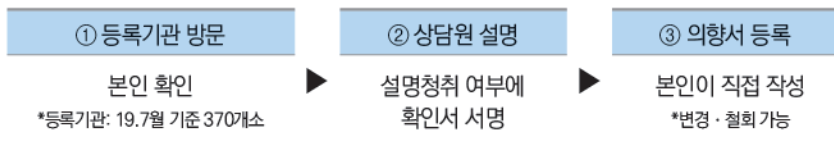
김할머니 사건 :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76세)의 가족이 평소 할머니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의료진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할머니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홍보자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향후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연명의료 :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는 도입 후 1년 반이 경과한 '19. 7월 기준으로 약 30만명이 등록하였으며, 이 중 60세 이상의 신청 비율이 88%일 정도로 고령자의 관심을 많이 받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주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전국 254개 중 40개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접수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나,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신청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홈페이지는 국민들에게 생소한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도, 조금 더 국민을 위하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019. 8.20.~8.28.)로 국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기관’을 확대할 경우 우선 지정해야 할 기관 유형으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의료기관(민간병원 등)은 38.4%,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등)은 16.1%,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3.6%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정책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홍보가 필요하다”, “신청서 접수기관을 확대해서 접근하기 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서 접수 업무담당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면서 다음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먼 곳까지 가서 접수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록 철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연명의료제도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건소 등에 비치하고, 정부 24와 연계하여 홈페이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사무소(주민센터)·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도입, 온라인을 통한 등록 철회에 대한 개선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접수기관 확대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며 국민 중심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 국민을 위한 공공 휴양시설, 제도로 보완합니다”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20.6.8.)

일주일 전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절반이나?

지난해 A씨는 여름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휴양림을 7월초에 예약했습니다. 평소 뇌병변 장애가 있어 침대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동생 B가 몸이 많이 호전되어 휴가를 같이 갈 수 있게 되어 들뜬 A씨는 8월초에 급히 연락하여 침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운영자는 침대가 없다고 거절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서 선납액의 50%인 7만원이나 위약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B씨의 사정입니다. 2018년 B씨는 6월에 휴양림을 예약하였다가 사정이 생겨서 10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그간 예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국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C씨는 올해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3월초에 예약했던 오토캠핑장 사용을 취소하였는데, ○○시에서는 조례 상 전염병 사태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D씨는 태풍 타파 상륙 때문에 해안가의 리조트 예약을 취소했는데 담당자는 환불을 약속했음에도 14일이 지나도록 입금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문제, 과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을 위한 시설! 국민에게 불리한 운영?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국민의 여가활동 장려, 관광 진흥, 휴양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휴양림·캠핑장·야영장·펜션 등 휴양·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양림 147곳, 캠핑장 112곳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경관도 좋은 덕분에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휴양·체험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사용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50%에서 90%까지의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하여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다수 시설들이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제도는 두고 있었으나, 운영자의 잘못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배상제도는 두고 있지 않은 문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선납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면책 적용 기준으로 ‘천재지변’, ‘기상 재해 접근 곤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전염병, 교통 통제, 비상사태 등 이용자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상황을 포괄하지 못해 이용자들이 면책받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불요청에 대하여도 ‘즉시’, ‘7일 내’, ‘14일 내’ 등 처리 기준이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 담당자가 행정편의상 1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환불지연에 관한 불만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권익위는 언론보도와 민원동향, 국민의견 설문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첫째, 휴양림이나 캠핑장 등 숙박시설의 위약금 수준은 10~20% 수준으로 상한선을 제시하였고, 이용일 기준으로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약을 원하는 희망자가 많은 경우 예약대기제를 활용하여 예약취소와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설점검, 보강공사 등 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이용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운영자 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천재지변 이외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회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전액환불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약취소나 시설운영 정지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3근무일’ 또는 ‘5근무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다수 환불사태의 경우에는 반환 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시각에 부합하는 위약금 부과 및 환불정책이 민간분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거나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 휴양·체험시설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시설 운영자 유의사항’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다한 위약금 분쟁,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및 22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90%까지 부과되던 과다 위약금 문제, 9일전에 최소했는데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던 문제, 전염병 사태가 예고되어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부된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이 국민을 위해 마련한 휴식처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2장



정부행정을 깨끗하게

“11.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이제는 그만”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17. 12. 26.)

반복되는 관행, 기관과 퇴직자의 부적절한 연결

2016년 10월 A기관 국정감사장 현장. C위원은 A기관의 계약내역을 제시하며 특정기업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B회사는 A기관 퇴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사업 관리계약을 대부분 B회사에 맡기고 있네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금년 8월에도 2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관리대상 100여곳 가운데 절반은 B회사가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공무원이나 인근 주민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B회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A기관의 지사건물 2층에 있어요. 임대료도 내지 않고 말이에요.”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자단체와의 계약체결 문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 부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특혜성 계약의 사각지대, 퇴직자

정부는 그동안 현직과 전직 공직자들이 유착하여 발생하는 비리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 임직원을 통한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입찰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5월 권익위는 퇴직자 등과의 독점적 수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각지대는 남아있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으나, 퇴직자로 구성된 퇴직자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따르는데, 해당 규정에는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을 유지하고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퇴직자나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퇴직자를 고용 시켜주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지어 퇴직자에게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퇴직자, 퇴직자단체, 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등을 촘촘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권익위는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퇴직자단체 간 특혜성 계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지침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도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뿐만 아니라 퇴직자단체와 그 회원사, 자회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0년 내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퇴직자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그동안 ‘자기 식구 챙기기’로 보일 수 있었던 퇴직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이 공공의 의미에 걸맞게, 퇴직자와 기관의 소중한 인연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2. 공직유관단체 임대사업, 보다 공정하게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18. 2. 5.)

약국 임대운영자 선정에 참여한 A씨

A씨는 ▲▲시 소유 건물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개인사정으로 약국을 이전하면서 한국○○회 소유 건물에서 약국 임대운영자를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 건물에 입점할 때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 한국○○회에서는 현장접수 방식으로 임대업체 선정을 비전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A씨는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과연 공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

B씨는 휴게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영업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지라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공사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직원은 계약연장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B씨에게 그동안 커피숍에서 올린 매출이 상당하니, 수익의 일부를 공사에 기부하면 계약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B씨는 고민 끝에 △△공사에게 1억이 넘는 기부품을 주고 나서야 계약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임대수익 과정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도로, 철도, 항만, 공항분야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규 등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에 경영성과가 비중 있게 반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양호한 상가, 사무실 등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이 불투명함에 따라 청탁관행 등 부패유발요인이 곳곳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찰공고 시 비전자적 방식(현장접수)으로 임대업체를 모집·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와 대면하면서 금품·향응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계약기간 연장 및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임대업체를 선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연장 시 별도의 근거 없이 임의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심의 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퇴직자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특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임대시설물의 현황이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되어 관리 및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그 가운데 위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수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정보처리장치(온-비드 시스템 등)를 이용한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투명한 모집·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임대업체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 시 계약 기간 연장과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기간 연장, 계약해지 등 중요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종전에 내부위원들로만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외부위원들을 과반수로 위촉하여 임대사업 운영관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 시설물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상거래 확인을 위해 임차 계약서상에 상가운영자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권 양도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안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자체 시설물 임대관리규정,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임대사업 입찰 방식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문화가 정착되면서 공공부문의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부패행위자의 업무수행, 차단합니다.”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17. 6. 12.)

기소는 되었지만 업무와 보수는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20년을 근무한 직원 A는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부장이었던 A는 이제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인 ○○기관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B부장과 C차장은 업무 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이들은 오늘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는 형사기소자, 징계의결 중인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수입금 횡령, 금품수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으로 3명이 면직되고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보수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규정에 직위해제 시 보수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 보수감액 규정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금품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되었거나, 징계 의결된 경우에 대하여 직위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기간동안에는 보수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 관련자에 의해 업무가 수행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공기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인데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고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규정하였지만 직위해제자에 대해 보수 감액규정을 두지 않아 보수를 모두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수를 그대로 다 받게 됨으로써 직위해제가 실효적인 제재로 역할을 다할 수 없었고, 예산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감액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직위해제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 되었으면서 보수가 감액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감액규정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부패 사각지대,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를 하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금품 비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인 자도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가 감액 되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 권고 이후 형사기소자 등을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았던 373개 기관 중 87.7%인 327개 기관이 규정 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시 보수 감액 등을 규정하지 않았던 50개 기관 중 37개 기관이 이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19.12월 기준)

이로써 일부 공공기관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되어 온 형사기소자, 금품 비위자 등의 직무수행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업무 수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대학을 튼튼하게, 회계를 깨끗하게”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19. 1. 21.)

부정을 밝힐지 고민하는 B교수

A대학교에 재직 중인 B교수는 요즘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다가 A대학교의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B교수, 나도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거 제기해봐야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불이익만 받을 게 뻔해.”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회계실수가 아니고 횡령이고 유용이에요. 더 방치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빨리 감사라도 받아야 하는데.”

“감사를 어디다가 받을 거야? 대학 안에는 감사실도 없잖아. 설마 법인에 알린다는 거야? 법인가사가 A그룹 임원 출신인 건 알고 있지?”

“흠... 그럼 외부기관에 알릴까요?”

“아니 알만큼 아는 사람이 대체 왜 그래? 우리대학 지금 중요한 시기인거 몰라? 가뜰이나 대학재정도 어려운데 부정·비리대학으로 낙인찍힐 일이 있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그 피해는 우리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가게 되는 거 몰라?”

B교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 제보할지 말지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자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느 것이 뒤통스런 책임 있는 부모의 행동인가’를 생각하는 B교수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아직 미흡해요

2018년 기준 전국의 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로 총 417개교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이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6조 403억원이고, 인건비나 경상운영비와 같은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 9,405억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내부의 감사조직이 미비했습니다. 국공립대학에는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감사기구’가 없고,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법인에만 감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사가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내부감사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기보다 덮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이하 ‘대학진단·평가’)에서 내부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실하고 평가인증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대학이 자정활동을 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내부 신고 절차, 신분보장 등 보호규정을 갖춘 곳은 서울지역 사립대학 45개교 중 4개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부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2013년 이후 사립대학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부 회계 감사의 실효성도 부족했습니다.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과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회계감사인의 지적사항도 드물었습니다.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의 시정·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넷째,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회계·학사·채용 등과 관련한 부정·비리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감사인력이 부족하여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113개교(31.5%)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개대상임에도 거의 모든 학교가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외 적립금을 통한 유가증권 투자현황, 법인 계열사 또는 수익사업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계약현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공직자가 대학 임직원과 접촉하여 대학 내부정보를 전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대학 재취업도 문제였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직을 맡지 않는 일반교수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교수로 채용된 다음 보직교수로 임용되어 취업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 깨끗한 곳으로 거듭나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권익위는 국공립대학교 42곳과 최근 약 2년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립 대학 42곳을 대상으로 대학 내부 감사조직 및 내부감사 현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 진단·평가 지표 및 평가사례, 사립대학 42곳의 외부회계 감사 실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최근 3년간 감리결과, 최근 2년간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주요정보 공개현황 등도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수차례 진행하여 대학 내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간담회, 민간단체 면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체적으로 비리를 밝힐 경우 재정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재정지원 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내·외부 공모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과 내부고발 등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도 대학 진단·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감사 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회계감사인인 외부회계감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였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개선 여부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넷째,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빈발 위반유형에 대하여, 구체적 처분기준과 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대학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독부처와 대학 간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대학 및 유관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뀌고 있는 대학들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학 내부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자체 감사를 제도화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대학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이 2020년 12월 까지 마련되고, 3주기 평가(2021~2025)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수혜제한 가중감경 사유로 '대학 자체감사를 통한 부정·비리 조치여부'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따른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반영하도록 규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사적접촉 제한장치 마련을 위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대학별 고발기준 마련 및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주요정보 공개 확대 등도 2019년 12월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반영되어 추진 중입니다.

자체통제시스템은 대학 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깨끗한 전당에 맑은 지성이 깃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다른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5. 입시전형료,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17. 7. 24.)

입시전형료, 낼 수밖에 없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 A와 B씨는 오랜만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곧 중요한 시기를 앞둔 아이들을 생각하며 여러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예민한 아이들을 상대하는 어려움 등 같은 마음을 서로 토로하면서 가까워진 A와 B는 자연스레 대학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은 수시 얼마나 썼어요?”

“○○은 아무래도 수시로 대학을 가야할 거 같아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 같은 대학 썼다던데.”

“맞아요. 우리 애도 □□대 썼어요. 근데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더라구요. 거기만 쓴 게 아니다보니... 입시전형료만 모아도 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비싸도 어쩔 수 없죠. 진짜 울며 겨자 먹기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전형료를 받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비싼지 알아보려고 좀 찾아보니 대학 알리미에도 별 정보가 없고 그냥 수입, 지출 현황뿐이더라고요.”

“뭐 내기야 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어디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전형료,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었나요?

입시철이 다가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은 온통 대학 입시에 쏠립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지, 어디를 가야할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타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2015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대입 전형료 관련 민원은 103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을 보면 대부분 입시전형료 책정이 불합리하다거나 너무 비싸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입시전형료 부담에 응시 기회를 다 활용하지 못하기도 했고, 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연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 72개 4년제 대학(국·공립대 40곳, 사립대 32곳)을 표본으로 전형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사립대(32곳)			국·공립대(40곳)		
		수도권 (23곳)	비수도권 (9곳)	최소/ 최대	수도권 (6곳)	비수도권 (34곳)	최소/ 최대
신규	수시	86.5	67.4	5 / 250	59.0	46.9	5 / 150
	정시	67.8	52.5	30 / 150	44.3	48.5	15 / 140
편입	정시	129.5	121.7	34.5 / 250	95.3	94.4	30 / 250

대학입시 전형료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사립대 전형료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형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해보니 원가계산 등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하기보다,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전형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더불어 대입 전형료 예산이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당과 식비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갑자기 공공요금이나

전형장소 임차료, 홍보비 등 지출을 늘리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 전형료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 〉

- 일부 대학은 1일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도 다른 대학의 3~4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음
- 수험생 학교방문으로 인한 공공요금 추정액은 약 2천만원(우편 5백만원, 전기통신 15백만원)이나 6억 7천만원을 지출
- 광고, 설명회 참석 경비 등의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출하였는데, 어떤 대학은 8천 7백만, 다른 대학은 10억 2천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편차가 심각

전형료,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형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전형료 책정 시 응시자, 수입금, 결산자료 등을 고려한 시행원가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형료를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형료 집행 감시를 위해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서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수입·결산 과정에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수당, 공공요금, 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형료 수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권고안을 수용하여 대입전형료 책정기준을 마련하고,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형료 예산 편성 기준과 예산서를 2019년 8월부터 공개하여 전형료가 투명하게 책정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어 인건비 등 수당, 여비, 식비 지급기준과 홍보성 경비 지출범위도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전형부터 국·공립, 사립대학의 대입 전형료가 10% 가량 인하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꿈을 펼칠 기회 앞에서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도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좋은 제도로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6. 공직자는 무료? 공개강좌를 공정하게!”

대학 공개강좌 운영의 특혜소지 차단방안(19. 2. 18)

거절할 수 없는 제의를 받은 A씨

○○대학 ○○학장실. 신입교수 A씨는 학장으로부터 내년도 ○○
최고위 과정을 운영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A교수, ○○최고위 과정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최고위 과정이요?”

“그래요. 어려운 건 없어요. 고위공무원들은 장학금 준다면 참여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다면 기업 임원들도 거절하지 않을 거고.”

“학장님, 내년에는 대학원 강의도 있어서...”

“허허 걱정하지 말아요. 올해 퇴직한 B교수님 있잖습니까. 최고위
과정 운영도 해보셨고. B교수님 위주로 과정을 운영하면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A교수는 명목상 책임만 좀 저주세요. 재정여건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거니, 그렇게 하시죠.”

A교수는 갑작스런 제의에 당황스러웠지만, 대학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 ○○국장실. C국장은 ○○대학의 최고위 과정에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800만원의 등록금을 감면해준다는 말이 솔깃하면서도 꺼림직 했습니다. ‘등록금 없이 참여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까?’ C국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고위과정,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대학은 학생을 주로 가르치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과정을 열수도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고위과정 등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고, 2018년 6월 기준으로 국립대 28개 대학이 177개 과정을, 사립대 13개 대학이 1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에 근거하지 않고, 교수 등 개설권자가 임의로 정한 방침 등에 따라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

강좌를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육·연구·논문지도 등 정규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좌 수 제한이나 개설 승인기준과 같은 절차가 없었습니다.

한편 공개강좌 유지를 위해 재계 임원 등 일반인에게는 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공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학자격을 재계, 정·관계 등 고위층 인사로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강좌는 대학의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적음에도 예산을 중복·과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등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직수당, 논문지도수당, 인솔수당 등 법적 근거도 없이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교·직원들이 수당을 나눠 받은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등록금 규모나 장학금 제도,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공개강좌 운영에 대한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대학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최고위과정을 바르게 합니다

권익위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최고위과정 등 공개강좌의 개설·운영사례와 공직자 대상 장학금 지급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 전체 국·공립대학과 일부 주요 사립대학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규정, 지침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개강좌 개설·운영 근거와 세부 내용을 학칙과 위임된 하위규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학본부 등 검증된 기구에서 개설승인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 시 강좌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차별하지 않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과정을 입학하거나 졸업한 공직자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여 최고위과정도 대학 내 다른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강사에 대한 적정 강의료 지급기준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18. 4월)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넷째, 법적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강좌 운영규정, 장학금 지급기준, 예산집행내역 등 과정 전반을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공개강좌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학의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관련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침 등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각 대학은 자체 「공개강좌 운영규정」 등을 제·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강좌 관련 일부 지침을 각 대학에 배부, 제도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국립대학은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을 권고 대상이 아닌 사립대학에도 통보하여 최고위과정 등 공개강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청탁 금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대학 공개강좌 운영이 투명하게 개선될 것이며, 일부 공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특혜성 장학금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 제공을 막거나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보다 공정하게”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18. 6. 25.)

취업실패에 울음을 터뜨리고 만 A씨

취업준비생 A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몇 해째 ○○공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힘겹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 하루빨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짬짬이 생활비도 벌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학점관리, 토익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린 탓에 남들이 다 하는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꿈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A씨는 드디어 1차 서류시험과 2차 전공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드디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자신의 대학동창인 B와 경쟁하게 된 A씨. 하지만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B가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실수가 있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넘어갔던 심사위원들이 유독 A씨에게는 공격적으로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A씨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슬프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A씨가 다시금 도전하기로 마음먹을 즈음, A씨는 또 다른 대학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B씨의 큰아버지가 현재 ○○공사의 이사이고, 당시 최종 면접을 진행한 심사위원 C의 직속상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면접 순간을 떠올리던 A씨는 유독 B에게 상냥했던 C의 얼굴이 떠올라 왈각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문제를 발견하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점검 대상인 272개 공공기관 중 200개 기관에서 총 94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채용에 관하여 부정합한 청탁을 받고 지시한 경우, 채용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경우, 심사위원의 구성이 부적절했던 경우, 모집공고가 잘못되었던 경우 등등이 있었습니다.

채용비리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악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정당하게 노력하기보다 부정하게

결과를 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채용비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관별로 채용절차등 제도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비리사실이 적발되어도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용절차, 보다 공정하게 개선됩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채용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경우에 관한 채용 취소근거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바꾸었습니다.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전형별 시험위원 구성 및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참관하도록 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주무기관이 정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 내·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 동안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채용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공정이 원칙이 되는 사회, 공정한 무대 위에서 청년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8. 갑작스러운 졸업자 응시자격 제한, 이제 그만”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 공직 임용 응시기회 확대 방안('20.6.8.)

군복무 중인데, 응시자격이 사라진다고요?!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입대한 A. 어느새 병장이 되었습니다.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A는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것을 기대하고 고된 훈련 속에서도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 B가 면회를 왔다가 내년부터 고졸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들짝 놀란 A는 B를 보내고 다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면회를 왔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요. 고졸 공무원 시행계획 공고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인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구? 아니 그럼 너는 시험 볼 수 있지?”

“그게 지금 안 될까봐 전화 드렸어요. 어찌죠. 이거 하나 보고 공부하면서 제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걱정해봐야 해결되는 거 없으니 너는 마음 다잡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알아볼게.”

“네, 엄마. 좀 알아봐주세요.”

통화를 끊은 A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했던 손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했지만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농업, 공업, 수산업 등을 전공한 졸업예정자나 졸업자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33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9급 공무원 채용 인원 중 기술계 고졸자 채용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술계 고졸자 채용 예정 인원〉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4	50	5	9	21	6	5	3	2	74	17	20	25	35	19	24	15	4

지금까지는 이 시험의 응시자격은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졸업 후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나 법령상 근거 없이 2021년 임용시험부터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로 변경되어 시험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기술계 고졸자 응시자격 기준〉

현 재(~2020년)	변 경(2021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 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상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안내”(17개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이와 같이 응시자격이 제한될 경우 2020년 졸업자는 한번 밖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특히, 2019년이나 202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복무중인 사람은 2021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익위는 갑작스러운 응시자격 변경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거나 준비하려는 졸업자들이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2~3년간의 충분한 행정예고를 거쳐 시험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주관 및 시행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개정된 표준안을 통보하여 2023년 이후부터 변경된 기술계고 졸업자 응시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회가 갑자기 제한되는 것은 기회의 평등, 공정한 사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제한 등으로 채용 등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작은 기회라도 소중히 보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 중도해고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20.4.20.)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대를 갓 졸업한 A씨는 올해 초 ○○초등학교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정규교사가 되고 싶지만 인근에는 정규교사를 모집하는 학교가 없고, 등록금 대출도 갚아야했기 때문에 기간제교원 자리도 A씨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A씨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익히면서 수업을 진행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여름방학 시작입니다. 그런데 방학기간 중 아이들한테 전해줄 전달사항과 과제물을 준비하던 A씨에게 학교 행정실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A선생님, 내일부터는 학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었잖아요. 그게 B선생님이 육아휴직 쓰셔서 그런 건데 내일 복직하시게 되어서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원래 내년 봄에 복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 근무로 계약서를 썼어요. 아니, 그리고 내일부터는 방학이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복직이요? 방학 때 복직해서 급여타간다는 소문을 들긴 했지만... 이진 정말 너무하네요.”

“선생님 마음은 아는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복직신청을 하면 당연 복직 처리됩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요? 1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근무하시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잘 살펴보면 정규교원이 소속 학교로 조기복직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다구요? 아니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전날에 이렇게 해고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닌가요?”

방학기간에 복직하는 교사, 그리고 그로 인한 해고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출산·육아, 질병, 가족 간호, 군 입대 등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휴직신청 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복직자는 근무지로 출근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방학기간 중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 장소인 학교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 휴직했던 정규교사는 당초 휴직 당시 신청했던 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학교)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에 복직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소위 ‘폼수 급여’라고 하여 언론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기 복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로 휴직자를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등에 따라 교원이 일시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수업공백이 예상되어 임시 채용된 인력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원이

예정보다 일찍 복직하면 학교별 정원 초과와 이로 인한 인건비 중복 지급(복직교원과 기존 기간제교원에게 급여 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학교에서는 소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도해고된 기간제교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전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한 달 치 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의 지침에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하루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교원 복직, 이제는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결과 이유 없이 방학에 맞추어 조기복직하는 문제 등에 대해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기존에 휴직신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심의를 복직 시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지침인 「교육 공무원 인사실무」를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더욱 강화되어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하게 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뽑았던 기존 기간제교원을 당연퇴직 처리하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직자와 기간제교원의 이중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 등 현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기간제교원을 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 본청에서 해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내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장치(서류전형면제, 가점부여 등)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원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본법등에 명시된 권익 보호절차가 온전히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고예고 시기 및 방법,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주요

사항을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명시하여 일선 학교에서 관련규정을 잘 몰라 발생하는 기간제교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소관 지침 및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소중한 인연은 배움의 기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원이 휴직하는 교사의 빈자리를 메우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간제교원의 권익 또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담긴 학교가 보다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 공공기관의 결정,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18. 12. 17.)

A씨를 절망케 한 불공정 심의

A씨는 국제금융위기로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는다 싶었는데 불운하게 닥쳐온 금융위기는 수출과 대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은 자력으로 살아 남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습니다.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곧 자금 회수도 되고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A씨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것은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A씨의 눈앞은 캄캄해졌고,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허름한 식당에 갔다가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 ○○공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심사위원과 동문이었다는 보도를 듣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연, 지연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번처럼 그 말의 의미를 느끼게 될 줄 몰랐습니다. A씨는 지난번 심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소위 ‘뺨’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A씨 앞에는 소주병이 하나 둘 쌓여갑니다.

위원회 구성 · 운영에 존재했던 문제들

공공기관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민간인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의사결정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는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제각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부적절한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의 비율이 다소 편향되는 등의 문제들이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도 있었고, 의사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도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심사만을 거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위원회 운영은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한 위원회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등 부패를 유발하거나, 공공부문 전반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바뀌는 심의위원회 운영

권익위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전국 1,1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들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구성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각계 우수 인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사람과 친족관계인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신 또는 주변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심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해충돌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해충돌사유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서면심사와 대리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안건을 통보하고 통과하는 졸속심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연관되지 않는 안건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둘러싼 불공정성 논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심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이 공공을 위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1. 뇌물 제재,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18. 2. 5)

부패의 연결고리, 뇌물

공공조달로 구입된 물품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조달 과정은 깨끗해야 하지만, 거래규모가 큰 공공조달은 그 특성 상 뇌물제공 등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뇌물에 녹스는 방위산업, 전관예우도 한몫('14.11월 연합뉴스)

“통영함·소해함 건조사업 담당 방위사업청 간부가 납품업체에게 수역원의 뇌물을 받고 군이 요구하는 기술적 성능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하여 성능 미달의 군함 양산”

공사·납품계약 뒤 ‘뇌물’, 공무원, 의원, 업자 유착('17.1월 연합뉴스)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공사·납품 계약자로 선정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5명 적발.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형태지만 소위 뒷거래로 ‘찍어준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 업자는 로비 명목으로 쓴 돈을 회복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음”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뇌물은 부패의 연결고리입니다. 특혜를 누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보다 많은 비용을 공공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혜택은 소수가 누리고 비용은 전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물제공업체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감경하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제재기간의 1/2,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규정이 있다 보니, 발주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뇌물 제공업체들에게 제재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 건설 공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은 뇌물비리에 따른 제재를 감경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21.2%)이 제재기간 중 최소인 3개월을 절반으로 경감한 1.5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40.9%)이 1.5개월 이하 제재를 받았다.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뇌물을 제공한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쉽다는 점에서 제재를 감경하여야 할 사유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곳의 부정당업자 제재감경 현황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45건 중 267건(35.8%)에서 감경이 있었는데, 이 중 뇌물비리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총 67건 중 35건(52.5%)이 감경되었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뇌물비리의 경우에도 감경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심지어 뇌물을 제공한 업자가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다른 업체들을 이용하고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에 대한 제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뇌물, 엄정하게 빈틈없이 대처합니다.

권익위는 뇌물제공업체 제재 감경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규정, 지침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재 및 감경배제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뇌물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 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에 권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뇌물제공 자체가 계약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부패행위이므로 제도개선안에 공감하면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도급업체 제재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이행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개정, 「정보통신공사 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행하였습니다.

뇌물은 공공조달 과정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가중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이 좀 더 청렴해지고, 더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민-관간 부패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2. 정책연구, 투명하고 올바르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18. 10. 8.)

공공부문 정책연구, 찾을 수가 없어요!

A씨는 대학원 졸업을 위해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위해 검색을 하던 중 B공공기관에서 2016년 논문주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연구자료를 찾기 위해 B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연구 보고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에 연구하신 「C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읽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검색할 수가 없네요.”

“「C제도 개선방안 연구」? 잘 모르겠네요.”

“2016년 6월 D일보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곧 연구결과가 마무리되고

개선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글쎄요... 그런 연구가 있었다면 저희가 공개를 했겠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없으면 비공개정보입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A씨는 자료를 꼭 확인해야 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 민감한 주제도 아닌 연구결과를, 그것도 공공기관의 자료인데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이나 사업·현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검사·조사·평가·개발 등을 합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약 33,985건으로 사업규모는 총 2조 3,631억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위 수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프리즘’) 또는 자료제출 등을 통해 파악된 수치로,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책연구용역 추진과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479개 중 428개(89.4%)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계약법령에 준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절차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실제로 E공사는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심의절차 없이 사장 방침을 받아 5년간 9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F공사의 경우 3억여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G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경영평가 총괄간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와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연구용역임에도 절반 이상은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프리즘,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통합공시(이하 ‘클린아이’)를 통해 각각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중 52.6%는 제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기준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책

연구용역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곳은 15.2%에 불과했습니다. H시의 경우 공개조례 없이 용역 발주부서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용역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하고 있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할 공시시스템과 통합 공시기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습니다.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중복·유사여부를 검토하기는 하나, 실제 연구결과가 중복·유사한지를 확인하지 않아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I시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타 지역 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용역비 2억 7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얼마나 중복되고 유사한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프리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의 유사도검사서비스, 민간 표절검사업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들은 자체 보유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사를 하다보니 기존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그밖에 빅데이터와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또 프리즘의 경우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이 아닌 내부서버(PC)를 이용하고 있어 저장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한 연구용역으로 만듭니다.

권익위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프리즘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수집했습니다. 또 알리오, 클린아이 등 통합공시포털을 통해 현황 파악이 어려운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년간의 과제목록 및 연구기관, 계약방식, 계약금액과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추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관별로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그 사유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등을 관리규정에 담도록 하여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을 마련하여 경영평가단 운영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와 프리즘, 알리오, 클린아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은 계약방식과 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통합공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각각 프리즘과 클린아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종 검수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리즘, KCI 유사도검사서비스 등의 검토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하거나 연구부정 여부 등을 심의·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 제재와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책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과반 이상의 기관이 「연구용역 관리규정」(조례 포함)을 제정·정비하였으며, 그밖에 기관도 관련 규정을 정비 중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를 통해 자체 연구보고서와 외부용역 연구보고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원문공개여부와 연구기관, 계약방식 및 계약금액을 명시하는 등 연구용역 공개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ALIO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외부용역 연구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연구보고서

외부용역 연구보고서

제목

검색

번호	제목	등록일	원문공개	연구기관	계약방식	계약금액
6	공무원연금의 법적성격 분석 연구	2019.12.12	비공개	(사)한국공법학회	수의계약	19,400,000원
5	미래지향적 조직 설계를 위한 조직인단 연구용역	2019.11.26	비공개	(주)중앙경영연구소	제한경쟁입찰(합상에 의한 계약)	27,038,900
4	공무원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2019.11.25	공개	(주)시스템네스트	입찰(합상에 의한 계약)	33,500,000원
3	공무원연금 재정소요상정 사례연구	2019.11.15	비공개	한국정무회 계획회	수의계약	19800000
2	중장기 풀해지 정책 개선 연구용역	2019.10.15	공개	(주)케이지제호인	수의계약	9,600,000원
1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 신규사업 발굴 용역	2019.09.03	공개	(사)한국안전학회	제한경쟁입찰	44,224,590원

〈알리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공시사례〉

나아가 2019년 말 기준 39.2%의 기관이 과제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결과와 제재 등 사후조치를 연계하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공유가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정책연구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권익위는 정책연구용역이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23. 자격, 갖추는 것이지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18. 12. 26.)

자격, 갖추지 않고 빌려도 되나요?

아장아장 걷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A씨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주고 나오던 B씨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떠는 재롱, 아이한테 좋은 음식 등 정보를 나누던 A씨와 B씨는 어느새 뉴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린이집이요. 다른 어린이집 원장한테 자격증을 빌려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빌려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았대요.”

“어머나! 어제 다른 일 한다고 뉴스를 못 봤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예?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예... 어린이집은 아니고, 저번에 보니까 어떤 변리사가 돈을 받고 변리사 명의를 빌려주고 상표랑 디자인 출원도 대리했대요.”

“아니 자격은 그 사람이 갖추는 건데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또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일이 왜 자꾸 이리 벌어지는지...”

“이래서야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의심이 가겠네요. 좀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국가전문자격 대여 · 알선행위, 제재는 제각각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사 등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으로, 자격이 있어야만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없이 활동을 하면 국민의 생명, 재산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당연히 빌려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빌려주도록 중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도 대여 ·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하면서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종 국가전문자격증의 근거 법률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마다 제재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으로 달랐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에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한 경우가 있는 반면,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경우, 형사처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존재했습니다. 또한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일부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국가전문 자격증의 제재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여·알선행위, 제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 법령의 국가전문자격 대여·알선행위 제재 규정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전문자격 대여·알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믿을 수 있는 자격, 엄격한 관리로 완성됩니다.

“24. 촉탁의사 관리규정이 마련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18. 6. 25.)

의사는 오지만 병원은 가야한다?!

사회복지사가 꿈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도 익숙해 지고 입소자들과도 친해져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입소자 B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A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내일 의사선생님 오시면 봐달라고 하지 뭐.”

이 시설에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의사가 방문해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 다행이라고 A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B씨와 함께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B씨가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A씨는 시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환자가 많았나 보네요. 의사선생님 오셨다고 들었는데 진료를 못 받는다고 해서요.”

“아~ 오시긴 하는데 금방 가세요. 그냥 병원 다녀오시는 게 편해요.”

“예? 그러면 촉탁의사가 왜 필요한 거죠?”

A씨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급 100만원?! 규정미비로 인한 과다 지급

정부는 장애인, 노숙인,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설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탁의사는 한 달에 2~4회 시설에 방문하여 진료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데, 이 인건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한 달에 1~2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인 253만원을 수령해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회 진료시 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는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장애인거주시설의 촉탁의사 근무 규정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에 대비해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보조금을 낭비하게 만들고, 다른 시설의 촉탁의사 근무 규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촉탁의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표준화된 서식이 없다보니 시설마다 내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촉탁의사의 업무범위, 근무시간 그리고 진료기록부 작성과 보관과 같은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촉탁의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기관의 점검 규정도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별다른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촉탁의사, 이제는 관리됩니다.

권익위는 해당 시설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에 두는 촉탁의사의 월정액 인건비에 맞는 근무 시간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촉탁 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실질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과 촉탁의사 간의 업무협약서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서식에는 협약기간, 업무범위, 방문요일 및 근무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촉탁의사의 근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을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촉탁의사제도가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2019년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권고 내용이 포함된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이 있는 곳에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망만 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 좋은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제도개선을 통해 촉탁의사를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시설 입소자들도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5. 의료현장을 깨끗하게, 리베이트 관행개선”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18. 2. 26)

약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될 수도 있다?

만성질환이 있어서 자주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A씨. 자주 병원에 가다보니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자주 가던 병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A씨, 요즘도 그 병원 다녀? 그 병원 리베이트로 떠들썩하던데.”

“리베이트? 그게 뭐죠?”

“약이나 의료기 판매업체에서 의사나 약사한테 자기 회사 물건 써달라고 돈이나 물건을 주는 거야. 구매 실적에 따라 사례비도 얹어주고 그런 거지. 어느 업체는 의사들 해외여행도 보내줬다더라.”

“아하... 근데 그것도 수사를 받게 되나요?”

“당연하지. 리베이트가 있으면 특정 약이나 의료기기를 쓰도록 환자를 유도할 수 있잖아. 환자야 잘 모르니 의사 말을 듣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일부러 비싼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베이트하면서 생긴 돈을 회사가 부담하겠어? 약값에 스리슬쩍 넣겠지.”

“나도 약 처방받으면서 좀 비싸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럼 리베이트 피해가 나한테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뿐이겠어? 나중에 보험료에도 포함되겠지.”

텅 빈 통장이 떠오른 A씨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왔습니다.

리베이트 문제, 이렇게 개선합니다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지 여부는 사실상 전적으로 의료인의 결정에 좌우됩니다. 그 때문에 제약회사 등 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많이 사용되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업체 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품을 얻어주거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같은 비용을 대신 납부 해주기도 하고, 명품백같은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가이고, 한번 도입되면 소모품은 독점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핵심인력에

대한 리베이트는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그리고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비용은 가격에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원 의료기기 구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리베이트를 받고 의료기기를 결정하는 행태를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약품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율정화 규약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약회사 등 업체의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제약회사협회에 고지하였고, 제약회사가 매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행사의 영업 행위내역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대행을 맡기면서 뇌물을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의료기기 구매 시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물품, 추가 할인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 리베이트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관리 사각지대였던 대형업체에 의한 리베이트, 부가적 서비스 명목의 리베이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이면 부패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한 차례의 제도개선으로 모든 리베이트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부패현상을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3장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26. 장애학생 특수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19. 7. 15.)

몸이 불편한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A씨

자폐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B를 돌보는 A씨. A씨는 B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살다보니 장애 학생인 B의 재활치료비 지원을 연 초에 신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비로 치료비를 내다보니 빠듯한 생활에 부담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던 중 같이 치료를 받는 아이를 둔 C씨를 만났습니다.

“C씨, 아이는 재활치료 잘 받고 있어요?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못해서 요새 자비로 치료하고 있어요.”

“B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1년에 한번만 신청하는 게 아니예요. 1년에 3번은 신청 받을걸요. 모르셨어요?”

“네? 예전 학교에서는 1년에 한번만 신청했었는데... 그래서 전 여기 와서도 그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희망이 생긴 A씨. 그러나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지금 알았을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잘 몰라서 겪어 왔던 불편함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0,78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부족해 학부모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때로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통학비 지원 : 중증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어려워 통학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 · 하교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부를 지원
- 치료비 지원 : 장애증상 치료 · 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치료 · 언어치료 등 치료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보조인력 지원 :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내외활동과 신변처리 등을 보조해주는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

통학비 지원 분야	치료비 지원 분야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정보 홈페이지 제공 현황〉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기구를 운영할 때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도가 잘 활용되도록, 보완합니다

첫째,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정보를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심의기구 위원 자격 :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 의무적 포함,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의무적 포함.

둘째,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업보조인력인 공무원근로자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7. 학교폭력 재심절차,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 합리성 제고방안(17. 6. 12.)

왕따를 당한 C의 서글픈 고민

A와 B씨에게는 비록 언어발달이 늦어서 말이 어눌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 C가 있습니다. C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더니 고등학생이 된 지금엔 만화를 곧잘 그려서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차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많이 줄어들어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여보, 우리 딸 요즘 어두워진 거 같은데 상담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응이 어려운 것 같은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봅시다. 곧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주자고.”

그러던 어느 날 C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나 말 하는 거 막 흉내 내고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선생님이 나 괴롭힌 애들 혼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자질쟁이라고 하고 왕따 시켜요. 나...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학교 그만두면 안돼요?”

B는 훌쩍이며 말하는 C를 보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복잡한 학교폭력 해결절차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C가 친구들로부터 받은 따돌림은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C나 부모 A, B가 학교폭력사건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 및 조연 등)와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에서 전학, 퇴학 조치까지 9가지 조치)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의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면 재심절차로 이어 지는데,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학교폭력사건인데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가해학생이 당사자가 됩니다. 학교폭력사건의 당사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인데 말입니다. 그에 따라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고 징계결정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과 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10일의 출석정지·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측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전학결정이 취소되었는데 피해학생의 불복절차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결정되는 등 결정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재심결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 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이처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 C의 아버지였던 A는 딸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대책자치위, 재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서 1년이 소요되었고, 자신은 본업을 미룬 채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 다니다 보니 일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권익위는 2017년 2월 민원 동향,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재심 절차로 인해 다수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심절차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모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3년간('13.~'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현황과 징계조정

(심리상담 및 조연 등)와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에서 전학, 퇴학 조치까지 9가지 조치)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의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면 재심절차로 이어 지는데,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학교폭력사건인데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가해학생이 당사자가 됩니다. 학교폭력사건의 당사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인데 말입니다. 그에 따라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고 징계결정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과 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10일의 출석정지·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측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전학결정이 취소되었는데 피해학생의 불복절차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결정되는 등 결정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재심결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 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이처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 C의 아버지였던 A는 딸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대책자치위, 재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서 1년이 소요되었고, 자신은 본업을 미룬 채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 다니다 보니 일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권익위는 2017년 2월 민원 동향,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재심 절차로 인해 다수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심절차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모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3년간(13.~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현황과 징계조정

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안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재심제도의 주요 문제점이 불복절차의 이원성 및 중첩적 구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교장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개정하여 불복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경우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므로 피해학생도 심판참가인의 자격으로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취지에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의 내용과 같이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재심절차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학교폭력이 사라지거나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아이들의 가슴에 상흔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쟁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좀 더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품기를 바랍니다.

“28. 온라인 입사지원, 온라인답게 편리하게”

온라인지원서 사전확인 불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개선('17. 6. 26.)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A씨

A씨는 이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착실히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나마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채용서류를 들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려고 보니 무엇을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본인 확인을 해서 내려다보면 또 무언가 빠져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고 재입력을 하다보면 또 다른 내용을 요구합니다. 직종별, 회사별로 요구하는 자격은 다양한데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보니 여러 회사를 지원하는 A씨는 채용서류 제출에만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새 마감시간, 간신히 제출은 했지만 편리한 온라인 신청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기업들은 왜 이리 많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러다가 탈락하면, 내 정보를 삭제해줄까?’ A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덧붙여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온라인인데 존재하는 불편함, 해결하였습니다

편리해진 온라인 채용절차, 그러나 아직은 2%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 시에 채용희망자가 응시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자료나 입력하여 할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와 채용 후에 인사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채용 때는 채용을 위한 정보만 요구하고, 채용 후에는 그 이상의 정보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일자리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채용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게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 및 입력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채용절차와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 매뉴얼」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불편함, 관행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개인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작은 관행이라도 무겁게 생각하고 적극
발굴 ·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일자리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9. 출산휴가급여, 체당금에 반영됩니다”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포함(19. 9. 9.)

가난한 다동이 부부의 근심

A와 B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기쁨도 컸지만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직장동료들의 격려와 함께 출산 휴가를 쓴 B씨. 그런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의 동료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체불된 3개월의 임금과 3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체불된 퇴직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보.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데 출산휴가 중 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 우리 아가 병원도 다니고 옷도 입히려면 돈이 필요한데.”

- 체당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

“걱정하지 마. 당신은 몸조리에 신경 써. 내가 해결해볼게.”

남편 A씨는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씩 모아 둔 통장이라도 깨야겠다고 한숨을 쉬며 A씨는 은행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A와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주지 못할 때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3개월의 임금과 3년 동안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당금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체당금에 해당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B씨는 고용노동부에게 체불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체당금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재결을 받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대! 내가 얼른 청구하고 올게.”

A씨는 당장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인정해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매번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체당금 지급 대상인 임금의 해석이 서로 다른 점에 기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의 대상인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체당금제도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 및 근로기준법 전체의 목적을 해석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당금이 좀 더 넉넉해집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 체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견해를 바꾸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두 기관의 실무자, 그리고 노무사 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견해 차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면서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해 여러 차례 제기된 행정심판청구 사건들을 분석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포함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향후 법률안의 개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행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확대로 결핵감염 예방 강화(‘20. 3. 31.)

간호조무사 A씨의 걱정

“요즘도 결핵이 있어요?”

“사모님,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이 OECD 국가 중 1위랍니다.”

세계를 휩쓴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나온 대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와중에도 결핵은 아직 우리 사회가 떨쳐내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영화를 재밌게 보다가 한편으로는 결핵 관련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주기적으로 병원의 비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조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잠복결핵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있었습니다. 자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했지만, ‘나 말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결핵 양성인데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결핵은 잠복하였다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발병하고 가족이나 환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검진대상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A씨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간호조무사도 결핵 걱정 없습니다.

결핵을 후진국형 질병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중위생이 열악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치사율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것 못지 않게 추가적인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여러 환자를 만나기에 결핵균을 접하고 이를 전파할 위험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간호조무사의 민원과 국민콜 110 상담을 통해 의료인 등의 잠복결핵 감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힘쓰는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면밀한 결핵 예방시스템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7호, 2019.12.9., 제정)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결핵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료기관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감염 걱정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2차 감염을 방지하여 국민건강도 증진될 것이 기대됩니다.



“31. 어르신 운전자 안전교육,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19. 9. 23.)

반복된 문제, 통과는 했지만...

올해로 만 75세인 A씨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A씨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이며, 갱신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문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지역 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시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인지능력진단을 우선 받게 되었는데, 인지능력진단은 선 잇기, 교통표지판 구분이나 방향표지판 기억하기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지능력진단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다보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계속 실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상담실에서 시험지 형태로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 앞에서 봤던 시험문제와 똑같아서 문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통과하지 못했

다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야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A씨는 한편 찻찻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 통과해도 괜찮은 걸까?’, ‘나는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걸까?’ 여러 생각을 지우지 못한 A씨는 쉽게 시동을 켤 수 없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의 여러 문제점

「도로교통법」은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시 수행하는 인지능력진단에서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판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능력진단을 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치매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응시자가 문제에 적응할 수 있어 검사 결과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통보가 되지 않아 정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될 수 있는, 관리 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희망할 경우 매년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수한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운전자가 75세가 되어 의무교육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교육을 재차 이수하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전문가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가의 판단 없이 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탈락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로 인지능력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명단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치매로 진단받았음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를 유지하던 문제와, 동일 유형의 검사를 반복해 응시하면서 통과하던 문제가 사라집니다.

셋째, 운전자가 75세에 도달하여 의무 교통안전교육 신청할 때 교육이수 유효기간 내(예: 1년 이내) 해당 교통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으면 의무 교육 이수로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치매 선별검사 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진단을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로 대체하는 것과, 면허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을 통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2020년 연내 추진 중입니다.

안전운전은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직접 운전을 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면허제도 운영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본 제도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령운전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2. 자동차 안전, 소화기로 대비하세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18. 10. 22.)

캠핑을 기다리던 A씨, 안전 주의하세요!

A씨는 최근 캠핑에 푹 빠졌습니다. 캠핑 장비, 정보 등 정보를 찾아보면서 캠핑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 B와 식사를 하다가 뉴스에서 차량화재 보도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거 어쩌나. 저거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LPG 차량인데 차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터졌다던데.”

“냄새도 심하게 날 텐데 차안에서 왜 담배를... 저도 LPG 차량인데 환기 잘 해야겠네요.”

흡연자였던 A는 움찔했습니다.

“조심해야지. 캠핑 같은 거 갈 때 이것저것 많이 싸들고 가잖아. 그러니

더 조심해요. 화재 뉴스가 일주일에 두 번은 나오는 거 같아.”

“안 그래도 주말에 애들 데리고 캠핑 가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아 맞다. 차 안에 소화기라도 하나 사놔요.”

“소화기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 나중에 후회 말고 사뒀요.”

A씨는 캠핑을 가기 앞서 안전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화재엔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 있죠?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간 5,0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이는 하루 약 14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7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30,784건으로 이 중 5인승 차량의 화재는 전체의 47.1%인 14,487건에 달합니다.

차량 화재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수단으로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규정은 7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5인승 차량은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설치되지

많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수단이 없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없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승차정원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설치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화기의 설치 위치는 1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를 「자동차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ABC 소화기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성능 좋은 소화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ABC분말 소화기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이 부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경우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인식도 낮았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7인승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소유차량에 소화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자 절반가량은 소화기 사용법을 알지 못해 위급 상황 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위한 작지만 강한 준비, 소화기로 만듭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화기에 관하여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로 확대하였습니다.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된 것입니다.

둘째,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가 명확해집니다. 자동차규칙 제57조를 개정하여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자동차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을 뺀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1~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운전석 부근에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 하나는 동승자 또는

탑승자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16인 이상 승합자동차로 소화기를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개는 운전석 부근에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는 탑승자 상당수가 소화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이 형식 승인하여 시중에 판매 중인 ‘자동차용 소화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성능좋은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상태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재난본부 등은 관내 운수업체 및 터미널 시설 내 사업용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에 차량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과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 사용법 등 위급 상황대처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화재발생 시 사업용 운수종사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과목에 ‘차량화재 대처방법’ 내용을 신설하였고, 여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에 차량화재 대처방안을 담은 차량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교육과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개선 권고안은 차량 화재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여 생명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에도 주변 차량이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준비가 위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제도를 바꾸어나가겠습니다.

“33. 건본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해집니다”

건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17. 7. 10.)

건본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하려던 신혼부부 A, B씨

신혼부부 A, B씨는 함께 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들뜬 발걸음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그들을 반기는 것은 원인 모를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저기 모델하우스에 불났다.”

“우리 가려는데 아냐?”

“어... 맞는 거 같은데.”

“뉴스 보니까 3층짜리 모델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인근 500여 가구도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건본주택을 보며 A씨는 안도의 뜻인지

아쉬움의 뜻인지 모를 한숨과 함께 차를 돌렸습니다.

“몇 달 전에 다른 데서도 불났다고 하지 않았어?”

“어. 최근에 모텔하우스 화재사고가 참 많이 나네.”

“내가 늦잠자서 다행이다.”

“음...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 근데 다행이긴 하다. 아이고 어째... 다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슬아슬, 위험사각지대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기에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견본주택의 연간 화재발생비율은 1.92%로 일반건축물 화재발생 비율인 1.47%보다 높고,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도 일반건축물 1,240만원에 비해 8,070만원이 많은 9,310만원에 달합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각종 소방

안전규제로부터 벗어나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견본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대피출구와 직통 계단, 소화기만 2대 이상 비치하면 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같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는 설치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견본주택은 관할 지자체에 축조 신고만 해도 건축이 가능하고,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서장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견본주택이 상시 건물과 다를 바 없이 사용됨에도 형식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주기적·의무적 화재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화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견본주택, 안전도 견본일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는 견본주택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여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준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각종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축조신고 수리전 관할 소방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시

〈 건본주택 화재안전시설 설치 미흡 사례 〉



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는 비상대피로



대피출구 앞에 철재 난간과 에어컨을 설치

장에 준해 주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舊 국민안전처는 건본주택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0조 제6항을 신설하여 견본주택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 시 소방관서와의 협의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견본주택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견본주택의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집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찾아오는 견본주택! 이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더 안전하게 바꿉니다.

“34.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을 명확하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19. 4. 3.)

주거이전비, 다시 반환하라구요?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시행사로부터 기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지급받은 주거이전비를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장모 소유의 3층 주택 중 2층을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임을 인정받아 주거이전비를 받았고, 그 돈으로 이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환 요청을 받아 억울함에 국민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가 인척관계라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살았다고 보고, 무상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부정한 것입니다. 시행사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A씨는 거주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비롯된 분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잦았습니다.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세입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세입자의 권리행사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정을 정비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의 범위에 유상 거주자 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인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공공요금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입증 방안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익위는 세입자가 정당하게 주거이전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취지가 잘 반영되어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분쟁, 억울함과 민원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35. 잘못 부과한 전기료, 청구방식이 개선됩니다”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19. 2. 18.)

전기요금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회사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인천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A업체는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착오로 1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청구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A업체는 2015년 9월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하자 변압기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변압기를 300kw에서 450kw로 증설하였습니다. A업체는 이후 30개월 동안 고지서 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업체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량 착오로 요금이 적게 청구되었으니, 실제 사용량에 따라 미납요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한전의 통보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개월에 대한 미납요금은 총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갑자기 1억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A업체는 갑자기 거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청구, 모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과 공급조건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등으로 나누고, 다시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계약종별을 나눈 다음, 그 유형에 맞는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합니다.

약관에는 그런데 계량기 계산 착오와 같은 이유로 요금을 적게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실제 부과하여야 할 금액과 그동안 청구하였던 금액 간 차액을 한 번에 청구하였고, 기업은 갑작스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요금청구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1만원이상 적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청구한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7,423건, 금액으로는 약 94억여원에 달합니다.

- D사는 2011년 12월 290kw에서 390kw로 전기사용의 증설을 신청했으나, 한전이 계량기 배수를 잘못 입력하여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이 부과
- 2016년 3월 경 이를 발견한 한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3년치 76,274천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
- 그러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 불가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업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전기요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이렇게 늦게 청구하는 경우 한전도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됩니다.

즉, 변압기 신설이나 증설과 같이 전기공급환경이 바뀌는 경우 업무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업체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전기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수 있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합니다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분쟁이 반복되던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입니다.

둘째,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문구를 다음 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과소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공급 환경이 바뀐 경우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여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기본공급약관, 약관 시행세칙 및 요금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제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과소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납부에 편의를 두어 갑작스러운 부담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전기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덜고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속 불편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6. 공동주택 수도료 부과, 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 운영 투명성 제고(‘19. 4. 1.)

쓰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청구하는 걸까요?

A씨는 B아파트를 매입하였지만 입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여 한 달간 수도 사용량이 340톤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청구된 수도요금을 확인해 보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B아파트로 부과할 때 적용된 요금단가로는 A씨 세대의 수도요금이 33만원이지만, 관리사무소는 A씨 세대에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만원이 더 많이 청구된 것입니다.

A씨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예. 이 경우에는 33만원은 환급이 될 겁니다.”

“저는 50만원을 냈는데...”

“17만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청구한 거라 그쪽하고 말씀하셔야 해요.”

A씨는 관리사무소에 17만원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환급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아니 나는 쓴 게 없는데 왜 부과가 되나요? 환급해주세요.”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거랑 관계없이 세대별 사용량 검침에 따라 누진요금 단가로 부과한 거예요.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환급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A씨는 쓰지도 않은 돈을 내려니 가슴이 쓰라려왔습니다. 대체 저 17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그리고 왜 관리사무소는 세대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A씨의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요금부과 기준이 없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들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사업소는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두어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여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하여 수도사업소로 대납합니다. 그 외 공동수도요금은 세대별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전 세대에 공동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관리사무소는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요금단가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달리하여 산정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수도사업소는 누진이 적용되지 않은 1단계 단가를 적용하였더라도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 사용량에 따라 1~3단계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도사업소 단가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된 세대는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민과 관리사무소 간에 민원 및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대에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별다른 기준 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비율로 반환하거나 공동수도요금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 문제를 해결합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개별 세대에 수도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초과납부 등으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각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기준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잉여금의 처리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역을 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종 일어나는 세대 사용료 부담과 관련한 관리비 분쟁이 앞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37.

국가기술자격거전

A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신발은 흰색이어야 하고 신발 끈은 없어야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2016년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검정과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79개 국가기술자격검정종목 중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38.

토하무하이요귀

“그렇게 결제할 수 있어요?”

확인된 결과,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 대표 3명은 도서관 공연기획 등 문화

우선,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하여

가맹점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39-1.

연차 이요은 펴리하게 :

B씨는 출장이 잦아 KTX를 자주 이용하지만 지연 배상을 신청해본 적은

있어 잔액이 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있어 민원이

진행 중입니다.



39-2.

연차 이요은 펴리하게 :

“그러게.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공공할인이라는 이름만 붙였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SR의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40.

자기가 보으하지 않은 차라

합쳐서 압류가 수십 건이네요. 규정 상 압류를 다 해결하셔야 말소등록신청을

차량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이제 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이 쉬워집니다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 압류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